

## ◎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7-27호

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3일

금융위원회

###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규정변경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을 '신용등급 7등급 이하 → 6등급 이하'로 완화하고자, 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지원대상자 기준을 조정

#### 2. 주요 내용

##### 가.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확대(안 제11조)

법인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중 “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”를 “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”에서 “신용조회회사에서 산정한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”로 완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3월 15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서민금융과, 전화 : 02-2100-2615, 팩스 : 02-2100-2629, 이메일 : nslyloan42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 
참고사항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(주소 : 03171 서울특별시  
종로구 세종대로 209)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/법령정보/입법  
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